## 선수위원회 규정

제 정: 2020. 03. 17.

## 제1장 총 직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(이하 "연맹"라 한다) 정관 제33조제1 항제6호에 따라 선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의 데플림픽 참가한 장애인종목별단체에 등록한 선수에 적용한다.
- 제 3조(기능) 위원회는 정관 제33조제1항제6호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 - 1. 데플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 관련,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데플림픽 정신의 보급·확산
  - 2. 선수 권익 보호. 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
  - 3. 은퇴선수 지원에 대한 자문
  - 4.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(International Committee of Sports for the Deaf, 이하 "ICSD"라 한다) 선수위원 후보 선정 및 추천
  - 5. 정정당당한 운동선수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
  - 6. 정관 제13조제1항3호에 따른 대의원 및 정관 제22조제2항4호에 따른 회장선거로서 의 선수대표 선출
  - 7. ICSD 선수위원회와 협력에 관련된 사항
  - 8.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
- 제 4 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1. 위원장 1인
  - 2. 부위원장 1~4인
  -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.
    - 1. 위원회의 위원은 선수 또는 선수출신자로 구성하며 1개 종목에서 1명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.
  - 2. 위원 중 5명은 선거일 기준 데플림픽종목의 선수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로 선임되

며(이하 "선출위원"), 선출위원 입후보의 자격은 선거일 기준 데플림픽종목의 국가대 표선수(경력이 있는자 포함)이거나 2년 연속 선수등록을 필하고 전국 규모대회에 년 2회 이상 참가한 자이며, 그 외의 위원(이하 "위촉위원")은 선수 또는 선수출신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
- 3. 선출 또는 위촉 당시 데플림픽종목의 국가대표선수(경력이 있는자 포함)이거나 2년 연속 선수등록을 필하고 전국 규모대회에 년 2회 이상 참가한 자가 위원회의 과반수 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4. ICSD 선수위원회의 위원과 아시아태평양농아인경기대회(APDSC) 선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제2호의 위촉위원으로 본다.
- 5. 정관 제25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- 6. 남·여 위원의 비율은 각 30% 이상이 되어야 한다.
- 7. 하계종목과 동계종목은 4:1의 비율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, 선출위원과 위촉위원에 대해 각각 적용한다.
- 8. 위원은 만19세 이상이어야 하며, 세계 반도핑 규약(World Anti-Doping Code)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.
- ③ 제2항제2호의 선출위원 선임을 위한 선거인은 등록선수가 되며, 구체적인 선거인단 구성방법과 선출절차 등에 관해서는 내규로 정한다.
- ④ 위원장은 선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회장이 연맹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
- ⑥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## 제 5 조(위원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- 제6조(대의원 선출) 위원회는 정관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의 대의 원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지는 대의원이 되는 선수위원장 1명을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.
- **제7조(회장 선거인 선출)**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거인을 선출하고 선거운영 위원회에 추천해야 한다.
  - 1. 선수위원장
  - 2. 위원 중 선거인으로 선출된 자 5명(선수위원장 포함)
- ② 제1항의 선거인은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회장 임기 만료 60일 전까지 선출하여야 하

- 며, 새롭게 선출하지 않을 경우 회장 선거권을 제한한다.
- 제8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4년(연임가능)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,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.
  -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**제9조(위원의 해촉)**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출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고,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회장이 해촉할 수 있다.
  - 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 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 - 3. 제13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  - 4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5. 제13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  - 6.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  - ②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수대표가 제1항에 따라 위원에서 해임되었을 경우 해당 선수대표에서 사임한 것으로 본다.
- 제10조(회의소집)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  - ② 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한다.
- **제11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**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출석위원의 과 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2조(긴급한 업무처리)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13조(위원의 제척 및 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회의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  - 1. 위원 본인,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체육회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
  - 2.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 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

- 3.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
-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 장이 제척한다.
- 제13조의2(의무사항) 위원회의 위원,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1.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·유포 할 수 없다.
  - 2.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.
- **제14조(수당 지급등)**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,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(2020. 03. 17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